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핵심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the Key Factors of the Oral Collection in National Representative Library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이 재 영 (Jae-Young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핵심 요소 |
| 2. 해외 주요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 4.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미의회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를 국가적으로 진흥시켜야 할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하여 일찍부터 관련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구술 컬렉션을 대표적인 컬렉션 중의 하나로 수집, 활용, 보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구술 컬렉션이 전무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구술 컬렉션을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법령, 조직, 수집 정책, 서비스, 컬렉션, 교육 및 협업, 기금 및 후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oral history collections of national librarie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derive key factors to consider when building oral collections in National Library of Korea(NLK). The Library of Congress, the British Library, and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regard oral records as a national heritage that should be passed down nationally and those have been utilized and preserved successfully.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oral collections of these national libraries, several key elements - legislation, organization, collection policy, services, collection, education and collaboration, funding and sponsorship-to consider when building an oral history collec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NLK were suggested.

키워드: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 미의회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Nat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Oral history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British Library,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 이 논문은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제1저자, 교신저자)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
(jaeyoung.lee85@gmail.com / ISNI 0000 0004 8388 7953)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53-77,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5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구술사(oral history)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전승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도구이자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구술은 부족하거나 결락된 문헌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구술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자료원이 소멸되는 한계가 있어서 구술자료의 수집은 시급성을 요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구술사를 바탕으로 한 구술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사와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에 구술사가 활용되고, 구술자료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화하여 역사적인 사료로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지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 위치한 국내 도서관은 그동안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키우고 공동체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기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민의 구술채록에 관심을 갖고 구술채록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고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이라는 전략 사업 아래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이라는 핵심과제와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라는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2019).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국내의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할 책무를 지닌 보존기관으로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생산 제작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활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구술 컬렉션이 전무한 상황으로, 최근에 구술 컬렉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지식자원으로서 구술자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후대로 보존·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처음 만들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하였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립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가대표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방안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oogle에서 “National Library Oral History Collection”으로 검색하여 가장 많이 수록된 미의회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구술자료 관련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역사, 법령, 조직, 구술자료, 컬렉션, 서비스, 교육 및 협업, 연구 기금 및 후원으로 분석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미의회도서관과 호주국립도서관은 2019년 9월과 11월에 직접 방문을 통해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영국국립도서관은 추가적인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하여 각 기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수행된 구술자료 컬렉션에 관한 연구로, 이호신(2007)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의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5명의 원로예술인에 대한 구술채록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성과물의 활용과 서비스, 사업의 의의와 성과 등 구술채록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성미(2019)는 과거사 진상 규명, 부산의 향토음식으로 접근하는 지역사, 독립운동가 5인의 대화 등 부산지역 박물관의 생활문화자료를 활용한 구술전시 현황을 살펴보고, 구술자료 수집 및 구술전시 활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연경 외(2019)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을 국가자원화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국내 구술자료 관리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해외 사례 조사,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관련 법령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선영란(2019)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구술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구술원자료에 대한 보존은 소홀한 편임을 지적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 각 기관·공공단체 등의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조사'를 통해 구술주제, 구술자료의 생산연도, 목록보유 여부, 간행물, 서비스 방식 등 국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가 수집하여 관리·서비스

하고 있는 일련의 현황을 정리·분석하였다.

반면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Joelle(1999)은 1900년대 프랑스의 구술 컬렉션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고, 대학, 고등교육기관, 문화국, 박물관 네트워크, 사운드 및 영상 스튜디오, 전시기관의 구술자료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구술 컬렉션과 법적 측면, 국립도서관 시청각부서의 컬렉션 등 도서관에서 다루는 구술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Davis, Ellis, Ingen(2009)은 미의회도서관의 대표적인 구술사 프로젝트인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활용한 교육학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치를 교육 활동을 통해 재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Klaebe와 Burgess(2009)는 도서관과 잠재적 연구자들과의 관계, 구술사, 디지털 스토리, 사진자료 등 공공 및 지역사회에 관한 역사적 유산을 수집하는 호주 문화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Jobling, Naar, Hanley(2012)는 호주국립도서관과 호주페럴픽 픽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호주 페럴픽 픽 구술사 프로젝트〉의 의의를 다루었고, Lloy(2013)는 미의회도서관의 〈미국 시민권 구술사 프로젝트〉의 과정과 성과를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Gallway(2013)는 영국의 MMB(Millennium Memory Bank) 구술자료 활용에서 구술자료의 접근성 및 맥락화를 강조하면서 자료에 첨부되는 요약기술서 및 맥락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Wan Wee Pin(2014)은 싱가포르의 기억을 수집하는 〈싱가포르 메모리 프로젝트〉의 목적과 수행 과정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술하였고, Bradley(2014)

는 호주국립도서관의 구술사 및 민속컬렉션이 이용자들에게 구술 원자료에 대한 검색 및 접근성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시스템 혁신사항을 기술하고, 호주국립도서관의 컬렉션, 구술사 자료의 생산 원칙, 구술자료 접근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Bradley와 Puri(2016)는 구술사 관련 파트너십의 콘텐츠와 메타데이터 작성, 공유 양식 관련 문제와 위험관리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구술자료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윤리적인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호주국립도서관의 <레즈비언·게이의 구술사 프로젝트>에 관한 Reynolds와 Robinson(2019)의 연구가 있다. 종합하면 국가대표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반면, 국외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국가문화유산의 한 형태로 수집하게 된 과정과 컬렉션을 소개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 해외 주요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2.1 미의회도서관¹⁾

2.1.1 역사

미의회도서관은 의회, 정부, 학술 단체,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범국가적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3대 기본 원칙으로 첫째, 의회와 연방정부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며, 셋째, 미국인이 관심을 갖는 인물, 사회, 집단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원본이나 사본, 대표작을 수집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의회도서관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을 수집하기 위해 각 주제 영역의 분야별 전문가와 수집 정책을 수립하여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1억 6천만 건이 넘는 컬렉션 중 많은 부분이 Special Collection이며, 비도서 자료의 형태인 매뉴스크립트, 마이크로폼, 사진, 녹음자료 등 각각의 유형에 따른 수집 정책을 갖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구술자료는 'American Folklife Center(이하 AFC)'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고 있다. AFC는 1928년의 미의회도서관의 음악과(Music Division)에서 신설한 아메리칸 포크송 아카이브(Archive of American Folk-Song)를 만든 것이 시초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 전문가들이 미국 독립 100주년, 민속, 전통, 하위문화, 민족적·지역적 다양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민속학 연구와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6년에 미의회는 "미국의 민속생활사를 보여주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여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Public Law 94-201)」를 제정함으로써 AFC가 설립되었다. AFC는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음성 기록의 보존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는 등 컬렉션의 미래를 위한 보존과

1)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https://loc.gov/>

지 담당하고 있다.

2.1.2 법령

1976년에 제정된 「Public Law 94-201,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Folklife」는 센터 설립과 위원회 운영, 센터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의회도서관장이 이 법령에 근거하여 센터의 기능을 완수해야 함을 밝히고, 아카이브로서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1999년에 AFC는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을 통해 의회로부터 운영 전권을 위임받고, 2000년에는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Veterans History Project〉가 진행되었다. 이는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예우하고, 전쟁 영웅, 참담함, 공포, 승리를 배울 수 있는 정보원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고자 미의회도서관이 관련 구술 컬렉션을 수집한다는 법령이다. 이후 「Gold Star Family Voice Act of 2016」이 제정됨으로써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군인들의 직계가족까지 수집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에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of 2009」가 제정되면서, 미의회도서관은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이하 NMAAHC)와 협업하여 시민권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Civil Rights History Project〉를 진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후속 세대들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자유와 평등의 꿈을 향한 투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1.3 조직

AFC의 조직은 총 2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Director 1명, Head of Research and Programs, Head of Archive 아래 Research and Programs에 9명, Processing에 11명, Reference에 4명, Digital Assets Manager 1명, Administrative Specialist 1명으로 구성된다. Research and Programs에는 6명의 Folklife Specialist가 있고, 나머지는 Program Specialist, Reference Automation Specialist, Writer-Editor이다. Processing에는 5명의 Archivist가 있으며, 나머지는 Library Technician, Cataloger, Digital Conversion Specialist, Folklife Specialist로 구성된다. Reference는 2명의 Folklife Specialist와 2명의 Reference Librarian이 전담하고 있다.

2.1.4 구술자료

AFC의 아카이브는 미의회도서관의 보고(寶庫) 중의 하나로, 미국과 전 세계의 민속과 전통적인 문화를 기록한 민속학적인 도큐멘테이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현재 AFC 아카이브는 100만 건이 넘는 2천여 개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 건수의 최소 25%는 외국으로부터 이관된 것이고, 약 20%는 미국 내 비영리 권 전통에 대한 기록들이다. 즉, AFC 아카이브는 미국과 전 세계의 민속 관련한 최대의 아카이브로서 민속학, 민속생활, 사회언어학, 인류학, 민족학적인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35만 시간 이상의 녹음, 80만 장 이상의 사진, 필드 노트, 매뉴스크립트, 비디오테이프와 동영상 이미지를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민속학자, 민속음악가, 인류학자,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연구를 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개인 및 미의회도서관에서 수행한 작업물, 다른 연방정부나 주, 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등 자료의

출처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외부 현장연구가, 학자, 공적 민속생활사 프로그램으로부터 핵심 컬렉션을 수집하면서 컬렉션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2.1.5 수집

AFC는 개인 컬렉션의 경우, 생산자가 컬렉션의 범주, 콘텐츠, 정리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자료 중 필드 노트, 녹음, 사진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이외에도 컬렉션의 조직화와 보존에 있어서는 수집자의 원래 의도를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FC는 잘 관리되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Ethnographic Collections in the Archive of Folk Culture: A Contributor's Guide』라는 실용지침서를 통해 컬렉션 조직화, 레이블 생성, 기록화 방법 등 개인 컬렉션에 대한 기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미의회도서관으로 해당 컬렉션을 기부하기 전까지의 컬렉션 보관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컬렉션에 적합한 리포지터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AFC의 수집 부서의 담당 직원을 통해 해당 아카이브가 적합한 리포지터리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컬렉션의 기부는 수기로 작성하고, 컬렉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잠재적 수서 데이터 양식(Potential Acquisitions Data Sheet)”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부에는 기증(Gift)과 교환(Exchange), 복본을 위한 대여(Loan for duplication), 구입(Purchase), 이관(Transfer), 저작권 납본(Copyright deposit)으로 구분된다. 일단 개별 수집가와 도서관이 AFC에 보존함을 합의하고, 컬렉션의 이관이 결정되면 이

관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기부자는 AFC에 컬렉션을 제출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6 서비스

AFC에서 열람 승인을 받은 디지털 컬렉션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기기가 마련된 곳이라면 집, 도서관, 교실 어디에서든지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다. 컬렉션의 디지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60% 정도가 완료된 상태이다. 컬렉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AFC 방문 10일 전에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AFC 웹사이트는 수천 건의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연과 심포지엄의 비디오도 수백 개의 웹캐스트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컬렉션의 디지털화, 온라인 교육자원 개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홍보 등 센터의 온라인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 실제로, AFC는 2013년 10월부터 Folklife Today라는 미의회도서관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홍보를 위해 American Folklife Center Facebook, American Folklife Center News and Events, Dispatches from the Veterans History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AFC의 모든 자료는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수집한 사람들과 공연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공연자는 저작권에 관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컬렉션은 전체 저작으로서 그것을 모은 수집가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센터의 정책은 컬렉션의 복본에

대하여 기증자가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적당한 형태로 완성된 후에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연구자가 구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발행을 위해 복본을 요구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공연자(또는 그 상속자나 다른 권리를 갖는 집단)나 수집가로부터 이용 허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드 컬렉션은 방송이나 박물관의 이용을 위해 복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의회도서관 AFC의 Archive of Folk Culture와 해당 수집가, 공연자, 기관에 관해 사사(謝辭)를 밝혀야 하고 이용 허락서도 준비하여야 한다.

2.1.7 컬렉션

미의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는 구술사가 별도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AFC의 주요 구술 컬렉션으로는 <Veteran History Project(이하 VHP)>가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국가적 수준에서 미국의 전쟁 참전용사의 증언 및 개인사 녹화와 녹음기록 컬렉션을 수집하고, 국가 참전용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지역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VHP 컬렉션은 2016년 11월, 『Public Law 114-246, Gold Star Families Voices Act』가 통과되면서 군복무 중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들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손)에 대한 구술사까지 VHP 컬렉션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까지 VHP에 참여한 구술자는 대략 10만 명 이상이며, 면담자의 역할은 국가 전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15세 이상이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드 키트(Field Kit)를 제공하고 있다. 필드 키트는 미의회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이크와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를 사용하여 30분 이상 참전용사와 함께 음성이나 비디오 녹화를 하고, 최소 20페이지의 오리지널 미간행 기억, 잡지 기사나 일기, 10장 이상의 사진 원본, 편지, 예술 작품, 영화, 스크랩북, 개개인의 참전용사 이야기를 부연해 줄 공식적인 군대 기록과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팸플릿 등을 하나의 컬렉션을 만들어서 미의회도서관으로 송부하면 된다. VHP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료는 반환하며,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전기적인 데이터 양식(Biographical Data Form)과 참전용사 관련 양식(Veteran's Release Form)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일정 형식에 맞춰 보내고, 보내는 사람과 참전용사용 복사본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참전용사 관련 기관, 기록관과 박물관, 대학, 참전용사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관심을 갖는 개개인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 주에 100여 건 정도를 상회하는 꾸준한 기부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VHP에 참여한 면담자와 구술자는 그들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다른 목적, 개인적인 이용, 연구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담자와 구술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미의회도서관은 공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컬렉션에 대한 고유의 권리는 갖지 않는다. 따라서 컬렉션에 대한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승인은 이용자가 생산자인 면담자와 구술자에게 직접 동의

를 구해야 한다. 단, 미국의 저작권법인 「Title 17, Copyrights Act」의 공정한 이용(Fair Use Doctrine)에 근거하여 인용이나 주해, 비평, 뉴스 보도, 학문적 보고를 위해 저작의 제한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AFC에서 중요하게 수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로, <Civil Rights History Project(이하 CRHP)>가 있다. 2009년 5월 12일, 「Public Law 111-19,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of 2009」가 제정되면서 국가 주도로 시작된 CRHP는 시민권 관련 144건의 기록화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의 시민권 운동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새로운 인터뷰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서베이 정보와 인터뷰의 결과물은 미의회 도서관과 박물관의 영구보존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이하 OFP)>는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전환 시대의 현대 직업 문화를 기록화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미국 각지의 필드워커들이 무역, 산업, 선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600건 이상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2.1.8 교육 및 협업

AFC에는 자원봉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센터의 아카이브와 VHP에서 활용하고 있다. 무료 자원봉사이지만, 학술적인 경험 또는 다른 직업에 필요한 경험을 얻거나 커리어 계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필수 요건은 최소한 200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민속학과 미국학,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카이브나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1.9 연구기금

AFC는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 컬렉션 자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연구자와 필드워커들을 지원하고 있다. Archie Green Fellowship은 미국의 노동자 인터뷰를 중요한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음성 녹음, 사진, 비디오, 필드노트 등)으로 제작하여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Internship Program Fund는 AFC의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과 2명의 인턴을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는 기금이다. The Gerald E. and Corinne L. Parsons Fund Award는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을 위한 기금으로, 이 기금의 목적은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 컬렉션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있으며,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민속학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The Blanton Owen Fund Award는 1999년 민속학자인 Blanton Owen을 기념하여 미국 내 민속학 분야의 연구와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he Henry Reed Fund Award는 바이올리니스트 Henry Reed를 기념하기 위해 2004년에 조성되었으며 민속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1.10 후원

AFC로의 후원은 세제 혜택과 함께 국가의 문화적 탁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AFC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컬렉션을 수집·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Friends of the Folk Archive Fund에 기부하는 방법, 공적이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훈련, 연

구 기회를 지원하는 AFC 기금에 기부하는 방법, VHP에 기부하는 방법, 다양한 Fellowship과 Funds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2.2 영국국립도서관²⁾

2.2.1 역사

대영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이하 BL)은 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다. BL은 누구나 지적유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자료 및 디지털 자료로 발행된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장자료를 관리·보존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 개인, 단체, 정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한 「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를 제정하여 인쇄 및 디지털 자료를 납본받고, 각 컬렉션별 장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납본 이외 수집, 기증,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3백만 권의 인쇄자료가 수집되고 1억 7천만 권의 자료를 소장하여 보존하고 있다. BL의 다양한 컬렉션 중 하나인 Oral Collection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으로, 가장 많은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영국구술사협회(Oral History Society, 이하 OHS), 지역도서관, 타 기관 구술 아카이브 간의 협력을 통해 구술 아카이브의 허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구술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립재단으로 National Life Stories(이하 NLS)를 1987년에 설립하여 자체적인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NLS는 1985년 구술사가 Thompson과 Briggs가 진행한 National Life Story Collection으로 시작하여 정치, 산업, 행정, 문화, 종교 등 영국 내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 여성의 구술 인터뷰를 기록화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2.2.2 법령

「British Library Act(1972)」가 제정됨에 따라 1973년에 건립된 BL은 현재 영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규정된 납본 제도는 국가 장서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은 1709년 저작권법에 납본규정을 마련하여 1801년, 1814년, 1836년, 1842년, 1911년 총 다섯 차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이후 저작권법이 아닌 「Legal Deposit Libraries Act」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납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Legal Deposit Libraries Act」는 인쇄출판물의 법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인쇄 출판물, 온라인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개정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첫째, 비인쇄 자료에 대한 수집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녹음자료, 영화 필름을 제외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였다. 2013년에 제정된 「The Legal Deposit Libraries(Non-Print Works) Regulations(2013)」은 납본의

2) 영국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l.uk/>

범위를 디지털 출판, 웹사이트까지 확장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술자료의 음성자료에 대한 납본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구술자료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데이터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 2018년 8월 25일, EU 전체에서 발효된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개인 및 조직에게 적용됨에 따라 구술자료 수집 프로젝트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즉, 개인정보를 공적인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구술자료는 「Copyright Law」도 적용되며, 구술 컬렉션 장서 정책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구술자료를 기탁할 경우, 지적 재산권을 양도 혹은 법적 권리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기술했어야 한다. 특히 『The deposit of your oral history recording at the British library』 가이드는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구술자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술자료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구술자료 아카이빙에 대한 동의, 공적인 사용에 대한 동의 사항과 시청각 카탈로그(Sound & Moving Image Catalogue)에서 기록을 검색할 때, 구술자의 서명이나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동의도 포함한다.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생산자가 가지게 되며, 사후 70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BL에 납본한 경우, 저작권은 영국국립도서관 사운드 아카이브(BL Sound Archive, 이하 BL 사운드 아카이브)가 갖는데, 생산자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 범위, 이용, 공개 여부에 대해 조건을 BL 사운드 아카이브와 논의 후 결

정하게 된다.

2.2.3 조직

영국국립도서관의 독립적인 자선 신탁재단인 NLS는 2019년 6월 6일 기준으로 총 60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Director 1명, Deputy Director 1명, Associate Director 1명, Treasurer 1명, Project Director 1명, Archivist 2명, Assistant Archivist 1명, Senior Academic Advisor 1명, Bookkeeper 1명, Oral Historian and Researcher 1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Freelance Project Interviewer 5명, Collaborative Doctoral Student 1명, Freelance Oral Project Interviewer 7명, Transcriber 3명, Unlocking Our Sound Heritage Volunteer 2명, Trustees 12명, NLS Advisors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2.4 구술자료

BL은 영국에서 최대 규모의 구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인의 삶, 일, 문화, 개인적인 경험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오디오, 비디오 인터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서, 사진 등 문헌 역사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어 그 양이 방대하다. 컬렉션은 2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비디오 인터뷰 자료와 관련 문서도 링크를 통해 연계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9만 건의 음성, 비디오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구술자료의 양은 차이가 있다. 구술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는 것은 NLS와 구술 컬렉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성, 동영상 인터뷰 자료는 BL 사운

드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2.2.5 수집

각 주제 컬렉션마다 별도의 수집 정책을 가진 BL은 구술 컬렉션의 장서 정책을 통해 구술 자료 수집 목적, 수집 대상, 기탁, 구술 컬렉션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구술 컬렉션의 목적은 영국 최대의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고, 영국 내 구술사의 중심기관으로서 표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제공 및 타 기관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구술 컬렉션에서 수집하는 대상은 영국의 생활, 일 문화, 경험 등 광범위한 주제 영역 아래 오디오 및 비디오 인터뷰를 모두 포함하는 구술자료이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억, 경험, 정체성을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수집함으로써 국민과 공유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때, 영국과 관련된 주제, 소멸될 수 있는 주제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관이 만든 구술자료는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수집된다.

기탁의 조건은 구술자료와 함께 메타데이터,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BL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조건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기탁되는 구술자료가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일 경우는 영국국립도서관의 소장 물로서 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다. 한편 자료는 형태에 따라 관리·보존 방법이 결정되는데,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환경적으로 통제된 서고에서 보존되며, 처음부터 디지털 자료로 생성된 자료와 나

중에 디지털화된 자료는 영국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용 저장소에 관리·보존된다. 수집은 기증, 기부, 기탁뿐만 아니라 NLS 재단의 자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구술자료를 별도로 수집하기도 한다. 영국과 관련되고 소멸 가능성이 있는 주제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있으며, 이때 생산된 모든 구술자료는 구술 컬렉션에 귀속된다. 또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중복되는 수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6 서비스

BL은 구술 컬렉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술 컬렉션은 시청각 카탈로그를 통해 음성, 비디오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단어, 숫자를 이용한 간단한 검색과 주제, 장소, 언어, 수집, 생산연도 등 상세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색인을 이용한 검색과 다른 컬렉션으로 연계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술자료에 대한 마크, 제목, 유형, 수집 및 컬렉션 설명, 문서, 녹음 목적, 저작권, 접근, 이용 가능여부, 인벤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영국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아날로그 자료는 Listen & Viewing Service, 디지털 자료는 Sound Server Community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켄트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Finding Very Particular Material in Oral History Collections: a Research Toolkit and User Journey』 가이드는 구술 컬렉션 검색을 위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술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며, 영국인이라

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비공개 자료, 아날로그 자료는 연구자들에 한하여 신청, 승인, 예약 후 사용 가능하며, 약 8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인들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음성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동일하게 신청, 승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BL의 Rare Books and Music Reading Room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BL은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팟캐스트 등 이용자들이 구술 컬렉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BL 사운드 아카이브 홈페이지³⁾를 통해 주제별 구술 컬렉션에 대한 설명과 일부 음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9만 건이 넘는 녹음이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일부 컬렉션의 경우 음성파일의 중요 부분만 공개된 편집본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되는 음성자료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자료유형, 시간, 위치, 주제, 녹음 날짜 및 장소, 대상자, 면담자, 구술자료와 관련된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British Library - National Life Stories” 팟캐스트를 통해 일부 인터뷰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Sound and Vision 블로그, 트위터 계정인 @BL_OralHistory를 통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다.

2.2.7 컬렉션

온라인에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컬렉션으로 <Oral Histories of Jewish

Experience and Holocaust Testimonies>가 있는데, 이는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가 1987년에서 2000년까지 14년간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생존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186건의 구술 음성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거쳐 면담자로 활동하였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나치가 점령했던 유럽의 전역을 돌면서 생존자와 그 자녀들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The Holocaust Survivors' Centre Testimony Recording Project>는 제2차 대전 중 영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생존자들을 돕는 The Jewish Care Holocaust Survivors' Centre와 NLS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154건의 음성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NLS와 Tate Archive, Henry Moore Institute가 협력하여 운영한 <Artists' Lives> 컬렉션은 350건 이상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여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최장수 프로젝트로, 영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구술자료로 수집하고 인터뷰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Millennium Memory Bank(이하 MMB)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년 동안 BBC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한 <The Century Speaker> 시리즈로, 라디오를 통하여 수집된 640여 건의 개인의 경험을 모아 구성한 유럽의 최대 단일 구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 5세에서 107세, 다양한 인종의 구술자들은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상적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3) <https://sounds.bl.uk/Oral-history>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는 영국 내 100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각각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의 개인적인 삶과 과학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인터뷰하였으며, 1,000시간이 넘는 인터뷰 영상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2.2.8 교육 및 협업

BL, OHS, NLS는 공동으로 '구술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OHS와 BL에서 인증한 구술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단계별, 분야별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입문과정, 비디오 인터뷰를 위한 교육과정, 실습과정, 구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교육과정, 수집한 구술자료의 보존을 위한 교육과정, 데이터 보호법(GDPR) 교육과정, 수집한 디지털 구술자료를 편집하는 교육과정 등 지역별·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 내용 날짜와 장소, 위치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누구나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구술사와 관련된 컨퍼런스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술사를 장려·지원하고 있다.

2.2.9 연구기금

Goodison Fellow는 NLS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NLS 컬렉션을 활용한 영국인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NLS 컬렉션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 성과와 2차 창작물을 영국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 재원 마련이 어려운 개인 또는

학술 단체들을 위하여 구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Heritage Fund가 있는데, 영국 유산복권 기금과 주제별로 지원하는 테마 펀드, 예술 기금, 지역 기금 등 구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10 후원

NLS는 독립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및 기부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첫째는 The Gift Aid Scheme를 통한 기부이다. The Gift Aid Scheme은 NLS가 개별 납세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율을 국가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둘째는 유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유언장을 통하여 자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문구의 예시는 재산의 비율로 기부하고 싶은 경우, 재산의 정해진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를 하려고 한 대상 기관의 명칭이 변경 또는 다른 기관과 합병되었을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까지 제공하고 있다.

2.3 호주국립도서관⁴⁾

2.3.1 역사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이하 NLA)은 1901년 의회도서관으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멜버른에 위치하였으나 1927년 의회가 이전되면서 현재의 위치인 캔버라로 이전하였다. 1960년 의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NLA

4) 호주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a.gov.au/>

는 의회도서관에서 분리되었으며, 1968년 8월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NLA는 호주국가대표도서관으로 호주 및 호주 국민과 관련된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른 도서관 및 단체와 계약 및 협력을 통해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컬렉션마다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납본, 기부 및 구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 결과, 6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신문, 원고, 영화 등 매체별 컬렉션과 아시아, 태평양, 민속, 미술 등 주제별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정책인 'Service Charter'를 개발·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은 1950년대 Hazel de Berg가 인터뷰한 자료의 기증을 시작으로, 이후 J.Meredith의 민속자료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구술 및 민속 컬렉션이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호주 유명인들의 경험, 삶 그리고 활동을 인터뷰하였으며, 대규모의 사회사 인터뷰도 진행되어 현재 52,000시간 이상의 구술자료가 수집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2.3.2 법령

NLA는 『National Library Act(1960)』에 의거하여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NLA는 관련 법에 따라 정책 수립, 도서관 위원회 구성, 장서개발, 조직형성, 예산집행 등 그 기준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 근거한 『National Library Regulation』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수집, 접근, 사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NLA는 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 속하는 정부 기관으로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2013)』의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A는 『Copyright Law(1968)』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법정납본도서관으로, 호주 내에서 출판된 모든 인쇄자료는 1부씩 의무적으로 NLA에 납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납본의 대상은 도서, 신문, 악보, 지도, 포스터,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이다. 2014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생산되고 디지털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Digital Legal Deposit(2014)』을 제정하여 납본의 범위를 인쇄자료 및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자료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미간행물로서 납본의 대상이 아니며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와는 다른 특성의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2.3.3 조직

NLA은 크게 다섯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술 컬렉션은 Collection 아래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에 속해 있다. 총 부서의 인원은 12명으로, 기획, 수집, 정리, 보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Senior Curator 1명, 보존 전문가 4명과 수집, 정리, 기술, 서비스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 기획부터 보존까지 한 부서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구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인력으로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면담자가 있으며, 이들은 면담자 리스트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2.3.4 구술자료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은 호주 최대의 구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유명인들과의 구술사 인터뷰, 평범한 호주인들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사회사 인터뷰, 호주인들의 전통적인 대중문화, 노래, 춤,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민속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2,000시간 이상의 녹음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00시간 이상의 자료가 추가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속녹음이다. 호주 원주민의 노래, 춤, 음악, 구전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호주의 대중문화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각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의 인터뷰이다. 과학자, 작가, 예술가, 스포츠, 정치인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저명한 호주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세 번째는 호주 전체에 큰 영향을 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컬렉션이다. 1920년대 대량 실업, 1992년 에이즈 확산 등과 같은 사건이 영향을 끼친 개인, 단체에 대한 자료와 그 당시 발행된 뉴스, 신문, 사진도 함께 수집하여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네 번째는 소리 컬렉션으로 해변의 파도 소리, 희귀 동물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여 소장하고 있다.

2.3.5 수집

NLA은 주제 컬렉션에 따라 수집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은 NLA 장서개발정책 아래 미출판 컬렉션의 수집 정책을 따르고 있으

며, 도서관운영계획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수집 정책에는 'Oral History and Folklore'에 대한 정의, 수집 목적, 대상 범위, 접근 제한, 우선 순위 등이 기술되어 있다. 구술사와 원주민 컬렉션은 각계각층의 호주인 인터뷰와 호주인들의 전통문화, 노래, 춤 등 민속기록을 수집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주요 구성요소로 첫 번째, 한 분야에서 국가적 명성을 얻은 호주인, 두 번째, 인종, 직업, 특정 장소 거주인, 장애인 같은 경험을 공유한 호주인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사 인터뷰, 세 번째, 호주의 사회적,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속자료가 포함된다.

NLA는 지금까지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과 사건, 문헌기록이 담아낼 수 없었던 삶과 경험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침묵 및 감정을 담는 소리 등을 수집하여 음원화·문서화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을 기획·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적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될 만한 것을 수집하고, 둘째, 지역사회를 국가적 컬렉션에 연결시켜며, 셋째, 문화적 컬렉션의 국가적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생산된 구술자료에 대한 접근은 구술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면담자는 구술자가 사망할 때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협력 및 타 기관 간의 중복 수집을 피하기 위하여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구술사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술

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구술자료의 디지털화를 권장하고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한 시간 요약문, 녹취록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3.6 서비스

구술사와 원주민 컬렉션은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NLA 통합 목록에서 검색 후 특수 열람실이나 자체 플랫폼인 '트로브(Trove)'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트로브는 구술자료의 시간별 요약문(time coded summary)과 녹취록(time coded transcrip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키워드)검색도 녹취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술자료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연구를 위한 접근이다. 연구자들은 도서관의 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에서 직원의 감독하에 구술자료를 듣거나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고, 연구자들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출로도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둘째는 개인적으로 구술자료를 복사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인터뷰나 녹취록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도서관의 복사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뷰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구술자가 NLA 온라인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구자는 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뷰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셋째는 공공적 활용으로 연구자는 책에 기술된 인터뷰의 부분을 인용하거나 라디오 방송이나 공공 프리젠테이션에서 인터뷰의 클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적 목적으로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이다. 구술자는 자신의 인터뷰 공개 여부와 공개나 비공개 기간 설정 및 서류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구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구

술사 큐레이터가 인터뷰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고 있다.

2.3.7 컬렉션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Interviews by Hazel de Berg>, <Folk Music by John Meredith>,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Project>가 있다. 먼저 <Interviews by Hazel de Bergs>는 구술사가이자 사진작가인 Hazel de Berg가 20세기 호주 문화에 기여한 호주인에 대한 구술 컬렉션을 NLA에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컬렉션은 1950년대 호주의 유명한 시인, 예술가, 작가, 작곡가, 배우, 학자, 출판사, 사서, 과학자, 인류학자,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구술자료와 일부 강연 자료, 독서기록, 성적 증명서, 인터뷰 메모 등의 문서로 총 1,291건의 디지털화된 구술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다.

<Folk Music by John Meredith>는 Bushwhackers의 창립 멤버이자 호주민속협회의 설립자인 Meredith가 1953년부터 1994년까지 호주 전통민속 음악 연주, 암송, 구전, 춤곡 등을 500회 이상 녹음하여 NLA에 기부한 것이다. 음성자료뿐만 아니라 악보, 메모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및 개인적 복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용, 이차적 이용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는 NLA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구술 컬렉션으로, 과거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원주민 강제이주와 아동 분리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호주인을 대상으

로 구술자가 선정되었으며, 1999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추가적인 후속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009년 호주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된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Project>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호주인들과 아동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호주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주정부, 개인, 지역사회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았으며, 『Lost Innocents: Righting the Record(2011)』와 『Forgotten Australians(2014)』이 발간되었다.

2.3.8 협업

NLA는 미술관 컬렉션 수집 정책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술했던 만큼 고강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Australian War Memorial,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National Archives,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기타 주립도서관 등이 있다. NLA는 협력을 통해 구술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있으며, 구술자료의 메타데이터와 같은 기술적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공유하고 있다. 공식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 단체, 지역사회에도 컨설팅을 진행하여 자체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3.9 연구기금

NLA는 Communication Heritage Grant (CHG)를 통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원주민 단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관리·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네 가지 사업의 유형인 Significance Assessments of Collections, Preservation Needs Assessments of Collections, Conservation Activities and Collection Management, Training Workshops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특정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 작가, 예술가 등 젊은 학자들에게 참고 서비스, 예산 지원, 별도의 연구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Fellowship, Creative Arts Fellowship, Summer Scholarship, Asia Study Grants에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핵심 요소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대표도서관의 시작은 각각 다르지만, 일찍이 구술자료를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구술 컬렉션을 도서관의 대표 컬렉션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 양질의 구술 컬렉션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적인 측면과 행정·운영 및 인적 자원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AFC, BL, NLA는 공통적으로 구술 컬렉션을

수집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구술 컬렉션을 수집·관리·서비스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행정 조직을 갖추었으며, 기금과 후원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외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처음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 핵심 요소를 법령, 조직, 수집, 서비스, 컬렉션, 교육 및 협업, 기금 및 후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3.1 법령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서관법 안에서 구술자료에 대한 수집 및 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육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모든 관중의 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서관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 『도서관법』 제2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수집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구술자료의 납본이나 온라인 자료 수집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선 『도서관법』 제19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지침(2018)』의 자료 수집 방법 중 '제작'의 정

의를 개정하여 구술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생산하여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서개발지침의 일반자료 범위에 '구술자료' 항목을 추가 기술함으로써 구술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과 접근 권한 및 정보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술자료의 특성상 구술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구술자료의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2 조직

구술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 보존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구술 컬렉션만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센터나 재단, 부서와 직원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처음부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자료수집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선정하여 먼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궁극적으로는 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는 구술자료의 수집부터 정리, 보존, 서비스, 협력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수집팀과 정리팀, 보존팀, 협력팀, 서비스팀 등을 조직하여 구술자료 수집 기획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全) 단계를 고려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3 수집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 관련 수집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할 구술자료의 정의와 유형, 범주, 목적,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주제 발굴 및 우선 순위, 대상 범위, 접근 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고 한국 도서관계 구술사의 중심 기관으로서 표준 및 지침 마련, 컨설팅 제공과 함께 관중별 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구술기록 관리 전(全) 단계를 고려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수집 방법별 세부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특히 구술자료의 제작, 기증, 기탁, 교환, 대여, 구입, 유증 등 구술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와 수집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 개발, 도서관 자료와의 연계 등이 수집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3.4 서비스

구술자료 수집 정책과 함께 서비스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표준 지침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즉, AFC의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나 BL의 시청각 카탈로그, NLA의 트로브와 같이 구술자료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통해 구술 컬렉션이 가진 일련의

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을 적절히 하고 원활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구술자료의 분류, 기술,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구술자료종합관리시스템을 전국도서관에 보급하는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통합 목록에서 구술자료의 주제, 장소, 시간, 언어, 생산연도 등 상세검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술자료에 대한 제목, 유형, 수집 및 컬렉션 설명, 저작권, 접근, 인벤토리, 키워드, 시간별 요약문, 녹취록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지원 서비스, 매체 변환서비스, 연계서비스, 상설 전시나 기획 전시와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구술자료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와 같은 접근 권한, 이용기준, 열람 방법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구술컬렉션에 대한 웹캐스트, 블로그, 강연, 심포지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구술자료 관련 기록의 생산과 활용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5 컬렉션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역사적으로 주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구술 컬렉션이 만들어져왔다. 이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구술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도서관에서 먼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구술사업에 대해서도 그 결과물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국가대표도서관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컬렉션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술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시도하려는 공공도서관들을 지원함으로써 구술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구술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타 기관에서 제작하거나 수집한 자료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의성을 가진 주제로 평범한 한국인들의 기억과 그들의 목소리까지 기록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NLA와 같이 이미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연구자나 기관으로부터 구술자료의 기부나 기탁을 받아서 컬렉션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구술사가들이나 도서관의 구술자료 기증이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도 구술자료의 기증이나 기탁, 구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3.6 교육 및 협업

외국의 경우, 도서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회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이 대학교나 유관기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표준교육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구술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를 처

음 수집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사서 대상으로 구술채록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술사에 관해 기초적인 내용부터 구술채록사업의 기획, 수집, 관리와 활용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구술채록을 수행한 다양한 도서관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구술사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 의식을 키워주고 구술자료 수집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 학회나 단체, 기관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전국적으로 구술 정보를 교환하고 중복 수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구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및 관리에서의 고충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3.7 기금 및 후원

구술자료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집하고 생산하게 되며, 이를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서비스까지 수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미의회도서관의 경우, AFC의 설립부터 법령을 제정하여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컬렉션도 대부분 법령을 만들고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명한 구술사가 연구기금이 다수 마련되어 폭넓은 분야에서 주요 컬렉션이 형성되고 있었다. 영국국립도서관은

NLS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과 함께 NLS 컬렉션을 활용한 연구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다. 호주국립도서관도 CHG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구기금 마련이나 후원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편인데, 양질의 구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술사 연구기금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대표적인 구술 컬렉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외국의 국가대표도서관 구술 컬렉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미의회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가 국가대표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되어 일찍부터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집 보존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의회도서관의 경우, 법령을 만들어 AFC를 설립한 후 전 세계의 민속, 구술, 음악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하고 있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특징은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국국립도서관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을 보유하여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를 가능하

게 한 것은 NLS의 설립이었다. 독립된 신탁재단인 NLS가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국국립도서관에 이를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주로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컬렉션(건축가의 삶, 예술가의 삶, 작가의 삶, 과학자의 삶 등)이 많았다. 호주국립도서관은 1950년대 중반부터 Hazel de Bergs가 구술기록을 수집함으로써 구술 컬렉션의 기반이 갖추어졌고, John Meredith 민속 컬렉션을 구입할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면서 구술 컬렉션을 도서관의 대표 컬렉션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구술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 보존하는 팀이 12명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자체 구술 인터뷰실, 세 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보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모든 구술자료가 디지털화되어 'Trove'를 통해 음성파일, 녹취록, 요약문, 주제에 관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호주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호주인들로부터 호주의 사회사, 호주 원주민에 대한 민속학적인 컬렉션을 수집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려면, 법령, 조직, 수집, 서비스, 컬렉션, 교육 및 협업, 기금 및 후원이라는 7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술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술체록의 표준화로 수집 관리 매뉴얼과 정리 및 기술 지침 개발,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제작,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구술자료 관리 조직 기구와 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술자료 종합서비스를 수행

하면서 한국인의 기억이 담긴 독창적인 컬렉션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컬렉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3] 선영란. 2019.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자료의 현주소. 『2019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25-135.
- [4] 이호신.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예술정보관의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 현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3: 105-130.
- [5] 정성미. 2019. 부산 지역 박물관의 생활문화자료 수집과 활용 증대 방안: 구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구술전시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7: 55-79.
- [6] 정연경, 윤택림, 이호신, 이재영, 엄정현. 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1-1371029-00197-01.
- [7] April Gallway. 2013. "The rewards of using archived oral histories in research: the case of the Millennium Memory Bank." *Oral History*, 40(1), ARCHIVES (SPRING 2013): 37-50.
- [8] Garcia Joelle. 1999. "Collecting, Making Known, and Preserving Oral Heritage in a Written Civilization: A Challenge for Libraries." In *65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20-28 August 1999, Bangkok: Thailand.
- [9] Ian F. Jobling, Tony Naar, Marian Hanley. 2012. "The Australian Paralympic Oral History Project: Remembering reflecting, recording and promoting disability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9(3): 295-303.
- [10] Kevin Bradley. 2014. "Built on sound principles: Audio management and delivery at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40(3): 186-195.
- [11] Kevin Bradley, Anisa Puri. 2016. "Creating an Oral History Archive: Digital Opportunities

- and Ethical Issues.” *Australian Historical Studies*, 47(1): 75-91.
- [12] Klaebe, Hele G. and Burgess, Jean E. 2008. “Co-creating heritage: innovative uses of oral history and life narrative in Australian libraries.” In *XV Interational Oral History Conference*, 24-26 September 2008, Guadalajara: Mexico.
- [13] Robert Reynolds, Shirleene Robinson. 2019. “Marriage as a Marker of Secular Inclusion? Oral History and Lesbian and Gay Narratives on Marriage in Contemporary Australia.”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43(2): 269-284.
- [14] Roger Davis, Mark R. Ellis and Linda van Ingen. 2009. “Civic Engagement and Task Force Teaching the Veterans History Project into the University Classroom.” *The History Teacher*, 42(3): 341-349.
- [15] Timothy Lloyd. 2013. “The Civil Rights Oral History Survey Project.” *The Oral History Review*, 40(1): 50-53.
- [16] Wan Wee Pin. 2014. “Memory and the Nation: On the Singapore Memory Project.” *Alexandria*, 25(3): 63-70.

[홈페이지]

- [17]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loc.gov/>>
-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Internet <<http://www.loc.gov/acq/coldev/handbook.html>>
 - Digital Collections. <<https://www.loc.gov/collections/?fa=subject%3Aoral+histories>>
 - Library of Congress Oral History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f1pBKHKgw6A>>
 - The American Folklife Center(AFC). <<https://loc.gov/folklife/>>
 - Veterans History Project. <<https://www.loc.gov/vets/>>
<<https://memory.loc.gov/diglib/vhp/html/search/search.html>>
<<https://evalogue.life/tools-and-resources/oral-history-interview-questions-and-resources/veteran-history-project/>>
- [18] 영국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l.uk/>>
- National Life Stories 홈페이지 <<https://www.bl.uk/projects/national-life-stories>>
 - Sound and Vision Blog <<https://britishlibrary.typepad.co.uk/sound-and-vision>>
 - Sound Archive <<https://sounds.bl.uk/>>
 - Sound & Moving Image Catalogue <<http://sami.bl.uk/>>
 - Oral History <<https://www.bl.uk/subjects/oral-history>>
- [19] 호주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a.gov.au/>>

- 통합 목록 홈페이지. <<https://catalogue.nla.gov.au/>>
- Trove 홈페이지. <<https://trove.nla.gov.au/>>

[법령]

- 미국

- [20] Public Law 94-201, 94th Congress, H. R. 6673, January 2, 1976,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Folklife
- [21]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
- [22]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
- [23] Public Law 114-246, 114th Congress, H. R. 4511, November 28, 2016, Gold Star Family Voice Act
- [24] Title 17, Copyrights Act

- 영국

- [25] British Library Act, 1972.
- [26] Copyright Law, 1988.
- [27]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 [28]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
- [29] 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 한국

- [30] 도서관법 및 시행령
- 호주
- [31] Copyright Law, 1968.
- [32] Digital Legal Deposit, 2014.
- [33] National Library Act, 1960.
- [34]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Korea.
- [2]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Seoul: Korea.

- [3] Seon, Young-Lan. 2019. "Current State of Oral Materials Collect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10th anniversary conference*, 125-135. 1st June 2019, Seoul: Korea.
- [4] Lee, Hosin. 2007. "A study on Oral History Project o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The Korean Research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13: 105-130.
- [5] Jeong, Seong-mi.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collect and use tangible · intangible cultural data in the Busan Regional Museum- Focused on exhibits utilizing oral statements." *Journal of Museum Studies*, 37: 55-79.
- [6] Chung, Yeon-Kyoung, Yoon, Taek-Lim, Lee, Hosin, Lee, Jae-Young and Eom, Jeonghyun. 2019.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oral material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11-1371029-00197-01.

